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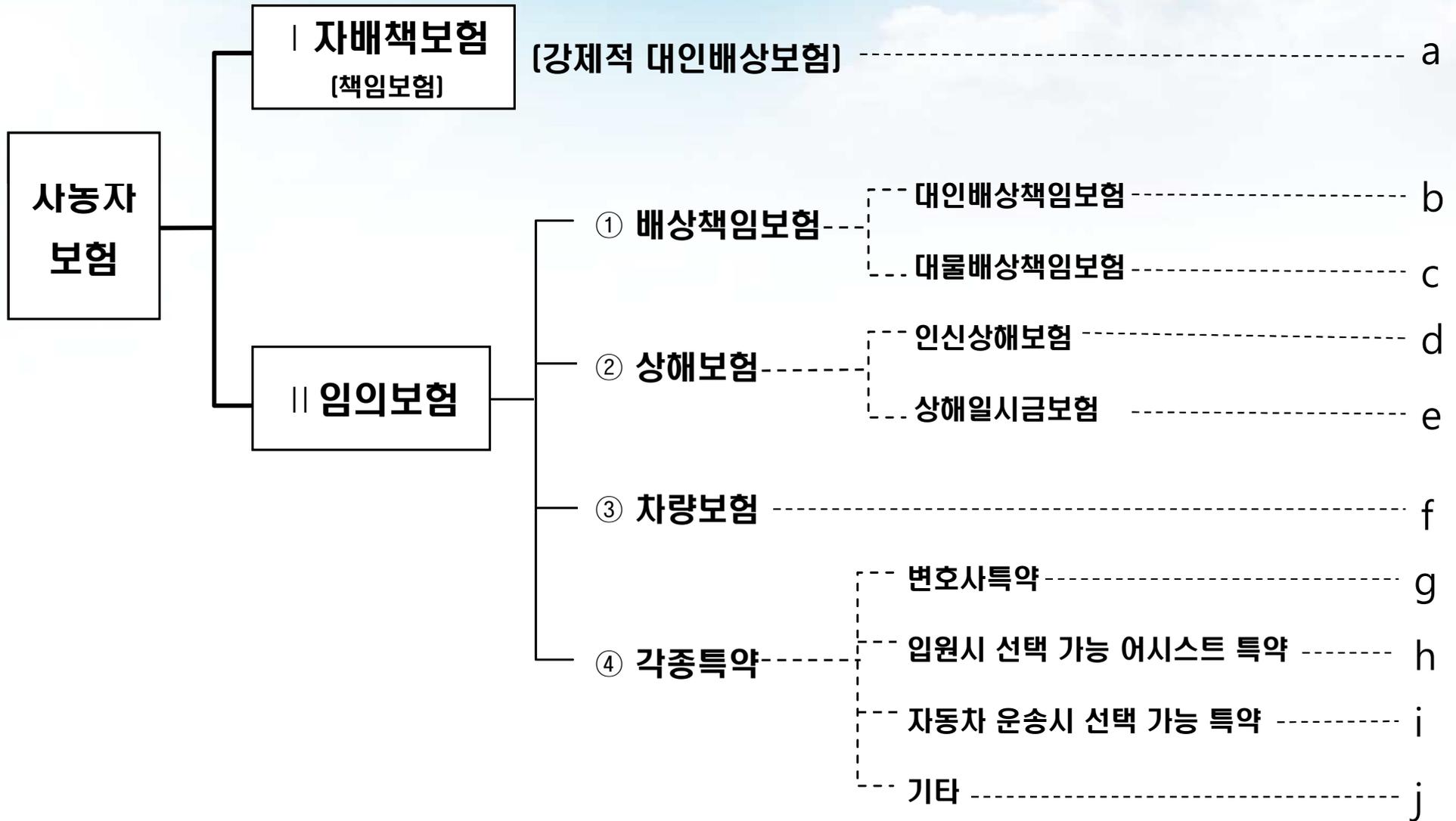
일본 자동차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 자배책보험을 중심으로 --

2014. 9.12

kiri

早稻田大學 명예교수
鈴木辰紀 (스즈키 다쯔노리)



자료 : 鈴木辰紀, 『자동차보험의 급소』 (개정판) 성문당, 2013년 p.106

감액적용상의 피해자 과실비율	사망 손해 후유장애 손해	상해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할 미만 	<p style="text-align: center;">감액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할 ~ 8할미만 	<p style="text-align: center;">20% 감액</p>	<p style="text-align: center;">20%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할 ~ 9할미만 	<p style="text-align: center;">30%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할 ~ 10할 미만 	<p style="text-align: center;">50% 감액</p>	

자료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자동차보험의 개황』, 2013년 p.28

(단위 : 건)

년도	감액적용 시 피해자의 과실비율			계	인과관계 판단곤란 (사망사안)
	7할 이상 8할 미만	8할 이상 9할 미만	9할 이상 10할 미만		
2008	5,322	10,544	2,663	18,529	40
2009	5,224	10,372	2,582	18,178	40
2010	5,140	10,826	2,662	18,628	41
2011	5,200	10,710	2,625	18,535	57
2012	4,963	10,996	2,499	18,458	43

자료 : 『자료 2』와 동일

< 자배책보험 금액의 변천 >

(단위 : 만엔)

차종		실시 년월일	1956 2.1	1960 9.1	1964 2.1	1966 7.1	1967 8.1	1969 11.1	1973 12.1	1975 7.1	1978 7.1	1985 4.15	1991 4.1	2002 4.1
사망	사망	}	30	50	100	150	3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000
	존사망상해				30	50	50	50	80	100	120	120	120	120
상해	중상	}	10	10	30	50	50	50	80	100	120	120	120	120
	경상		3	3										
개호수반 후유장애	제1급													4,000
	제2급													3,000
후유장애	제1급				100	150	3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000
	제2급				87	131	266	444	888	1,332	1,776	2,186	2,590	2,590
	제3급				75	113	235	392	784	1,175	1,567	1,898	2,219	2,219
	제4급				64	96	206	343	682	1,030	1,373	1,637	1,889	1,889
	제5급				53	80	177	295	590	884	1,179	1,383	1,574	1,574
	제6급				43	64	150	250	500	750	1,000	1,154	1,296	1,296
	제7급				33	50	125	209	418	627	836	949	1,051	1,051
	제8급				26	39	101	168	336	504	672	750	819	819
	제9급				19	29	78	131	261	392	522	572	616	616
	제10급				13	20	60	101	201	302	403	434	461	461
	제11급				9	13	45	75	149	224	299	316	331	331
	제12급				5	7	31	52	104	157	209	217	224	224
	제13급						20	34	67	101	134	137	139	139
	제14급						11	19	37	56	75	75	75	75

자료 : 鈴木 · 상동, p.12

● 임의대인배상보험의 면책사유

- 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 ② 전쟁, 내란, 폭동 등
-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쓰나미(津波)
- ④ 핵연료 물질의 방사성 등에 의한 사고
- ⑤ 핵연료 물질 이외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

(단위 : 건)

년도	사 망		상 해	
	면 책	대상 외	면 책	대상 외
2008	527	81	6,639	1,157
2009	463	73	7,155	1,228
2010	412	75	7,455	1,352
2011	478	56	7,818	1,401
2012	345	58	6,437	1,233

자료 : 손보요율기구 · 상동, p.27

< 자배책보험 보험료표(본토용) >

(단위 : 엔)

차종		보험기간	60개월	48개월	37개월	36개월	25개월	24개월	13개월	12개월
			계약	계약						
승합자동차 및 견인여객자동차	영업용								67,170	62,450
	자가용								17,380	16,420
영업용승용자동차	A								149,720	138,760
	B								118,580	109,980
	C								89,810	83,370
	D								40,310	37,610
자가용승용자동차					40,040	39,120	28,780	27,840	17,310	16,350
보통화물자동차 및 견인보통화물자동차 (자가용)	영업용	최대 적재량 2t 초과					97,930	94,300	53,600	49,900
		최대 적재량 2t 이하					66,500	64,100	37,110	34,650
	자가용	최대 적재량 2t 초과					68,720	66,220	38,120	35,730
		최대 적재량 2t 이하					44,640	43,090	25,630	24,040
소형화물자동차 및 견인소형화물 자동차	영업용					56,760	54,730	31,990	29,920	
	자가용					30,690	29,680	18,310	17,270	
소형이륜자동차					18,380	18,020	14,370	14,010	9,550	9,180
경자동차	검사대상차			37,780	36,920	27,240	26,370	16,500	15,600	
	검사대상외차	28,060	23,560		18,970		14,290		9,510	
원동기대자동차			17,330	14,890		12,410		9,870		7,280

주 : 1. 보험기간의 개시가 2013년 4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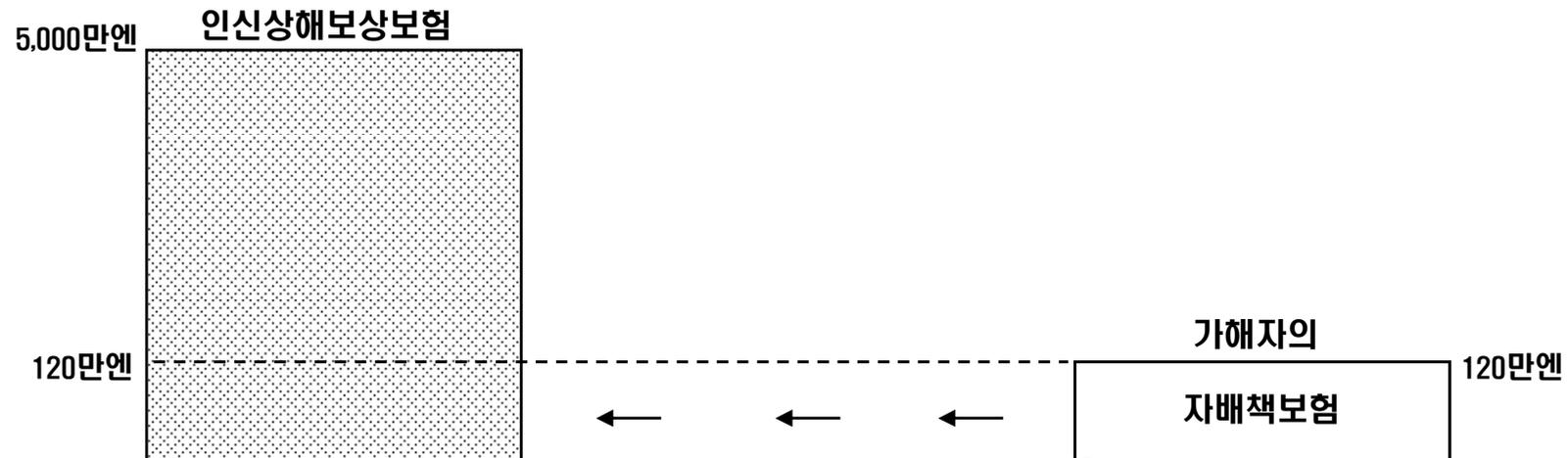
2. 상기 차종 이외의 차종 및 본토이도(섬) 용도, 오키나와 용도, 오키나와이도(섬) 용도의 기준요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음.

자료 : 鈴木 · 상동, p.116

< 사망의 경우(사례) >



< 상해의 경우 >



자료 : 鈴木 · 상동, p.91

연령조건	기명피보험자연령	일상·레저사용				통근·통학사용			
		골드		골드 이외		골드		골드 이외	
		차량보험 有	차량보험 無	차량보험 有	차량보험 無	차량보험 有	차량보험 無	차량보험 有	차량보험 無
연령불문 보상	...	159,660	72,290	171,240	77,300	168,260	76,010	180,480	81,280
21세 이상 보상	...	100,660	47,010	107,790	50,100	105,970	49,320	113,490	52,580
26세 이상 보상	30세 미만	73,970	34,770	81,530	37,980	77,790	36,390	85,790	39,800
	30세 이상 40세 미만	72,830	33,700	80,260	36,800	76,580	35,180	84,440	38,450
35세 이상 보상	30세 이상 40세 미만	68,100	32,260	75,020	35,200	71,570	33,730	78,880	36,830
	40세 이상 50세 미만	68,550	32,400	75,530	35,360	72,060	33,890	79,410	37,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70,800	33,660	78,000	36,740	74,410	35,200	82,040	38,470
	60세 이상 70세 미만	72,330	34,550	79,710	37,740	76,050	36,160	83,840	39,520
	70세 이상	74,140	34,930	81,710	38,160	77,960	36,550	85,990	39,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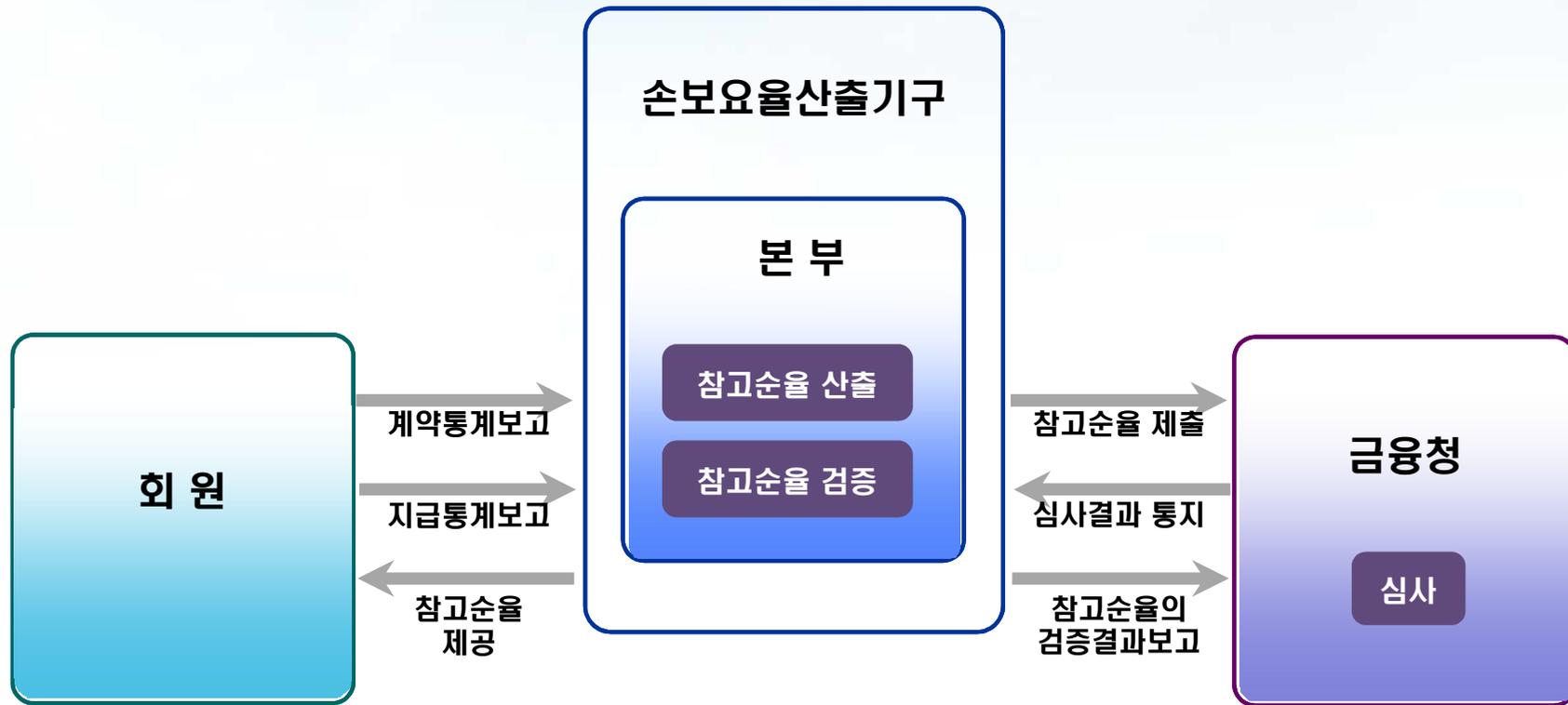
〈 회원일반(2014년 1월 1일 현재) 〉

아이오이넷세이도와 손해보험	Starr 배상책임보험
약사다이렉트보험	세콤손해보험
아사히화재해상보험	세종자동차보험
Assicurazioni 제너럴 리 S.p.A	소니손해보험
아니콤손해보험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	손해보험 재팬
알리안츠화재해상보험	손보 24 손해보험
e-디자인 손해보험	대동화재해상보험
AIU 손해보험	Zurich 인슈어런스
H.S 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에이스 손해보험	토아재보험
AU 손해보험	닛신화재해상보험
SBI 손해보험	일본코야손해보험
카디프 어슈어런스	일본지진재보험(JER)
공영화재해상보험	히타치캐피탈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페더럴인슈어런스
로이즈	후지화재해상보험
뉴인디아 어슈어런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II 상해화재보험	미쓰이다이렉트손해보험
스위스리 인터네셔널	메이지야스다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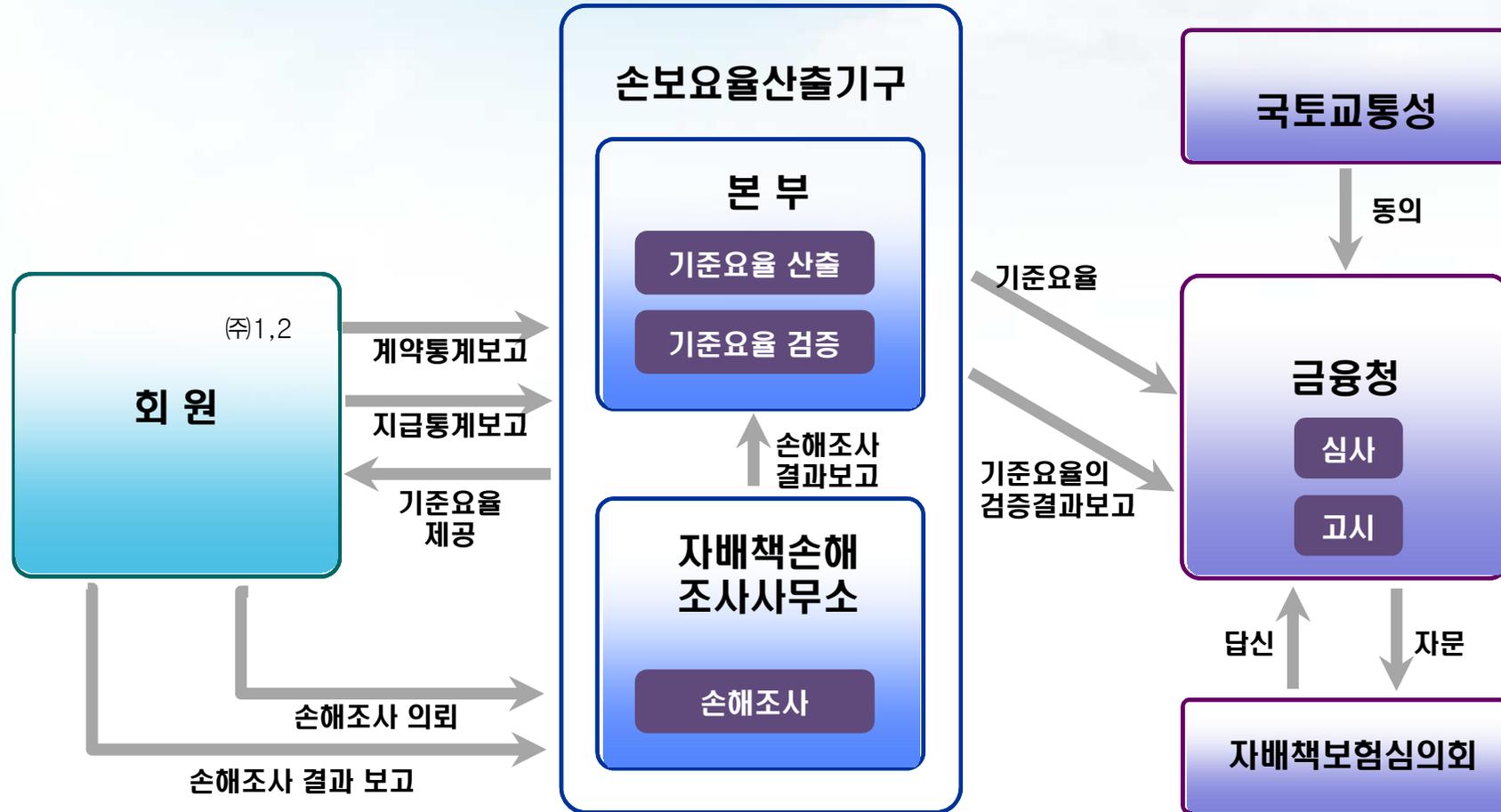
회원회사
40사

자료 : 손해보험요율기구 · 상동, p.128

자동차보험 참고순율 산출 및 제출의 흐름



자배책보험 기준요율 산출 및 제출의 흐름



주 : 1. 계약통계보고, 지급통계보고에 대해서는 모든 자배책 사업자가 대상이 됨.

2. 손해조사의뢰, 손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협동조합, '전국자동차공제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조합, '전국트럭교통공제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조합도 대상임.

자료 : 손보요율기구, 상동 p.138

< 교통사고 발생현황 추이(1948~2013년) >

年	発生件数		負傷者数		死者数	
	(件)	指数	(人)	指数	(人)	指数
昭和 23 年	21,341	...	17,609	...	3,848	23
24	25,113	...	20,242	...	3,790	23
25	33,212	...	25,450	...	4,202	25
26	41,423	...	31,274	...	4,429	26
27	58,487	...	43,321	...	4,696	28
28	80,019	...	59,280	...	5,544	33
29	93,869	...	72,390	...	6,374	38
30	93,981	...	76,501	...	6,379	38
31	122,691	...	102,072	...	6,751	40
32	146,833	...	124,530	...	7,575	45
33	168,799	...	145,432	...	8,248	49
34	201,292	...	175,951	...	10,079	60
35	449,917	...	289,156	29	12,055	72
36	493,693	...	308,697	31	12,865	77
37	479,825	...	313,813	32	11,445	68
38	531,966	...	359,089	37	12,301	73
39	557,183	...	401,117	41	13,318	79
40	567,286	...	425,666	43	12,484	74
41	425,944	59	517,775	53	13,904	83
42	521,481	73	655,377	67	13,618	81
43	635,056	88	828,071	84	14,256	85
44	720,880	100	967,000	99	16,257	97
45	718,080	100	981,096	100	16,765	100
46	700,290	98	949,689	97	16,278	97
47	659,283	92	889,198	91	15,918	95
48	586,713	82	789,948	81	14,574	87
49	490,452	68	651,420	66	11,432	68
50	472,938	66	622,467	63	10,792	64
51	471,041	66	613,957	63	9,734	58
52	460,649	64	593,211	60	8,945	53
53	464,037	65	594,116	61	8,783	52
54	471,573	66	596,282	61	8,466	50
55	476,677	66	598,719	61	8,760	52
56	485,578	68	607,346	62	8,719	52
57	502,261	70	626,192	64	9,073	54
58	526,362	73	654,822	67	9,520	57
59	518,642	72	644,321	66	9,262	55
60	552,788	77	681,346	69	9,261	55
61	579,190	81	712,330	73	9,317	56
62	590,723	82	722,179	74	9,347	56
63	614,481	86	752,845	77	10,344	62
平成 元 年	661,363	92	814,832	83	11,086	66
2	643,097	90	790,295	81	11,227	67
3	662,392	92	810,245	83	11,109	66
4	695,346	97	844,003	86	11,452	68
5	724,678	101	878,633	90	10,945	65
6	729,461	102	881,723	90	10,653	64
7	761,794	106	922,677	94	10,684	64
8	771,085	107	942,204	96	9,943	59
9	780,401	109	958,925	98	9,642	58
10	803,882	112	990,676	101	9,214	55
11	850,371	118	1,050,399	107	9,012	54
12	931,950	130	1,155,707	118	9,073	54
13	947,253	132	1,181,039	120	8,757	52
14	936,950	130	1,168,029	119	8,396	50
15	948,281	132	1,181,681	120	7,768	46
16	952,709	133	1,183,616	121	7,425	44
17	934,339	130	1,157,115	118	6,927	41
18	887,257	124	1,098,566	112	6,403	38
19	832,691	116	1,034,653	105	5,782	34
20	766,382	107	945,703	96	5,197	31
21	737,628	103	911,215	93	4,968	30
22	725,903	101	896,294	91	4,922	29
23	692,056	96	854,610	87	4,663	28
24	665,138	93	825,396	84	4,411	26
25	628,248	87	779,660	79	4,373	26

사망자수가 과거 최악인 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 하회

1975년 이래 재차 1만명 상회

1987년 이래 9년 만에 1만명 하회

1981년 이래 20년 만에 8천명대

최고 수준시의 반감 달성

1957년 이래 46년 만에 7천명대

1956년 이래 49년 만에 6천명대

1953년 이래 54년 만에 5천명대

1952년 이래 57년 만에 4천명대

THANK YOU

kiri

